

해양수산부 훈령 제248호

「항만 및 어항건설 정보시스템 운영규정」(해양수산부훈령 제153호, 2014. 2. 17)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 합니다.

2015년 05월 20일

해양수산부장관

## 항만 및 어항건설 정보시스템 운영규정 일부개정

### 1. 개정이유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5985호, 2015. 1. 6. 공포, 시행)됨에 따라 소속기관의 명칭 변경과 현행 규정의 운영 중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권한 위임사항을 지방해양항만청장 및 시·도지사에서 지방해양수산청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하는 명칭변경과 「항만법」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전담기관 지정 구체적 명시 등

###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항만법」,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등
- 예산상 조치 : 해당 없음
- 합의 : 생략
- 기타 : 신·구 조문 대비표

## 항만 및 어항건설 정보시스템 운영규정 일부개정

항만 및 어항건설 정보시스템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이하 “건설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연구·계획·예산”을 “(이하 “건설사업”이라 한다) 관련자가 신속한 행정업무처리와 비용 절감 등을 통하여 건설사업의 전체적인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계획”으로, “문서·도면을”을 “문서 및 도면 정보를”로, “교환·저장 및 공유가 가능하도록 하며, 수집된 정보를 분석·제공하기”를 “유통·처리 및 활용하기”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해양수산부와 산하기관,”을 “해양수산부와”로 “지방해양항만청장 및 시·도지사”를 “지방해양수산청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송·수신”을 “송수신”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전담기관”이란 「항만법」 제90조제2항에 따라 항만의 건설 및 유지와 관련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력 및 조직과 시설장비를 갖추고 시스템을 관리·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중 “계획·예산·설계·시공·감리”를 “계획·설계·시공·감리”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발주청과 계약상대자의 업무 담당자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를 “업무 및 민원사무는 시스템으로 처리되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자민원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해당 계약 그”를 “업무를 처리하는 사용자”로 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외의 부분 중 “행한다.”를 “수행한다.”로 한다.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항만법」 제91조에 의한 항만협회를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한다.

제6조제2항제9호 중 “운영환경 기능개선”을 “운영 개선 계획 수립”으로, 같은 조 같은 항 제10호 중 “처리”를 “관리·운영”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에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신설한다.

11. 시스템 보안 및 장애 관리

12. 그 밖의 시스템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7조제1항 중 “교환되는”을 “유통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8조제1항 중 “제반조치를 강구”를 “모든 조치를 마련”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의 “상시”를 “평상시”로 하며, 같은 조제4항의 “강구”를 “마련”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상시”를 “평상시”로 한다.

제11조 중 “대하여는”를 “대해서”로 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수행한 업무에 대하여 실태확인 및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보안지도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보안업무시행세칙」 제62조에 따라 정기 보안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보안지도 및 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에 대하여 시스템 관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리 장소에 출입하여 조사·검사 등을 할 수 있으며, 전담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 중 “기관”을 “전담기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제반절차”를 “모든 절차”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시스템을 통하지 않은 민원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모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업무”를 “민원업무”로, “별지 제2

호”를 “민원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제23조제2항의 “계약상대자가 시스템에 전자도면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시스템에서 제공하는”을 “건설사업을 준공할 때에는 준공성과물 제1항의”으로, “경우”를 “경우 시스템에”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의 “지불”을 “지급”으로 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8년 5월 20일까지로 한다.

##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b>제1장 총칙</b>	<b>제1장 총칙</b>
제1조(목적) (생략)	제1조(목적) (현행과 같음)
제2조(용어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용어 정의) ----- ----- -----.
1. "항만건설정보시스템"(Port Construction Information System, 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이란 해양수산부 소관 항만·어항건설사업(이하 " <u>건설사업</u> "이라 한다)에 대한 연구·계획·예산·설계·계약·시공·감리 및 유지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u>문서·도면</u> 을 정보통신망으로 상호 <u>교환·저장 및 공유</u> 가 가능하도록 하며, 수집된 정보를 분석·제공하기 위해 구축한 시스템을 말한다.	1. ----- ----- ----- ----- -----( <u>이하 "건설사업"이라 한다</u> ) 관련자가 신속한 행정업무처리와 비용 절감 등을 통하여 <u>건설사업의 전체적인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계획</u> ----- ----- <u>문서 및 도면 정보를</u> ----- <u>유통·처리 및 활용하기</u> ----- -----.
2. "발주청"이란 <u>해양수산부와 산하기관</u> , 「항만법」 제9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u>지방해양항만청장 및</u>	2. ----- <u>해양수산부와</u> ----- ----- ----- ----- <u>지방해양수산청장 및</u>

시·도지사를 말한다.

3.~6. (생략)

7. "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  
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  
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 또는 저장되는 정보를  
말한다.

8.~9. (생략)

<신설>

제3조(적용 범위) 건설사업의 계  
획·예산·설계·시공·감리 및 유  
지관리 등의 각 업무단계에서  
표준업무절차서에 따라 발주청  
내부 또는 계약상대자간에 유통  
되는 각종 문서 및 자료의 전자  
적 처리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  
및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  
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  
한다.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3.~6. (현행과 같음)

7. -----  
-----  
-----  
송수신 -----  
-----.

8.~9. (현행과 같음)

10. "전담기관"이란 「항만법」 제  
90조제2항에 따라 항만의 건설  
및 유지와 관련된 정보를 효율  
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력  
및 조직과 시설장비를 갖추고  
시스템을 관리·운영하는 기관  
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계  
획·설계·시공·감리 -----  
-----  
-----  
-----  
-----  
-----  
-----  
-----  
-----  
-----.



제4조(준용 규정) (생략)

제2장 시스템 운영·관리

제5조(시스템이용) ① 건설사업과 관련된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발주청과 계약상대자의 업무담당자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업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민원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해당 계약 그 이외의 자가 시스템 이용을 원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자 등록 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제6조(전담기관) ① 시스템을 관리·운영하고 사용자의 시스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제4조(준용 규정) (현행과 같음)

제2장 시스템 운영·관리

제5조(시스템이용) ① -----  
----- 업무 및 민원사무는 시스템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  
-----  
-----  
-----  
-----  
-----  
-----  
-----  
-----  
-----.

② -----  
업무를 처리하는 사용자-----  
-----  
-----  
-----  
-----  
-----.

③·④ (현행과 같음)

제6조(전담기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항만법」 제91조에 의한 항만협회를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한다.

② -----  
----- 수행한다.

1.~8. (생략)

9. 시스템 운영환경 기능개선에 관한 사항

10. 시스템 입력자료 처리에 관한 업무

<신설>

<신설>

③ (생략)

제7조(문서 및 자료의 관리) ① 전담기관의 장은 시스템에서 교환되는 문서 및 자료는 발주청에서 특별한 요구가 없을 때에는 계약기간 동안 사용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발주청이 건설사업과 관련한 모든 문서 및 자료에 대하여 특별히 저장이나 삭제 요구가 없는 경우에는 관련 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기록·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시스템의 관리 및 보호) ①

1.~8. (현행과 같음)

9. ---- 운영 개선 계획 수립-----

10. ----- 관리·운영-----

11. 시스템 보안 및 장애 관리

12. 그 밖의 시스템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③ (현행과 같음)

제7조(문서 및 자료의 관리) ① ----- 유통되는 -----

② (현행과 같음)

<삭제>

제8조(시스템의 관리 및 보호) ①

전담기관의 장은 시스템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적의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관리상의 제반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전담기관의 장은 비인가자가 주전산기에 접근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상시 점검체계를 유지하여 내·외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위적인 재난으로부터 시스템을 보호하여야 한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시스템 운영관계자가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얻는 정보 및 국가기밀사항을 외부로 누설하거나 도용할 수 없도록 보안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생략)

제9조(시스템 설치·운영 등)

① (생략)

② 전담기관의 장은 건설사업 관련 민원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시스

-----  
-----  
-----  
-----  
----- 모든 조치를 마련-----.

② (현행과 같음)

③ -----  
-----  
----- 평상시 -----  
-----  
-----  
-----.

④ -----  
-----  
-----  
-----  
----- 마련-----  
-----.

⑤ (현행과 같음)

제9조(시스템 설치·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템을 연중 내내 운영하여야 하며, 이의 업무지원을 위하여 상시 모니터링 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⑤ (생략)

제10조(전산실 및 장비의 유지·관리) (생략)

제11조(유지·보수) 전담기관의 장은 주전산기, 통신장비 등 전산 장비 및 프로그램 등에 대하여는 장비생산 또는 납품업체 및 개발용역자와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여 항상 정상적으로 유지 관리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관리·감독)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에게 시스템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고 자료를 요청하는 등 관리·감독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  
----- 평  
상시 -----  
-----.

③~⑤ (현행과 같음)

제10조(전산실 및 장비의 유지·관리) (현행과 같음)

제11조(유지·보수) -----  
-----  
----- 대해서  
-----  
-----  
-----.

제12조(관리·감독)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수행한 업무에 대하여 실태확인 및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보안지도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보안업무시행세칙」 제62조에 따라 정기보안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보안지도 및 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에 대해

해양수산부장관이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자 관련 교육) ① 기관의 장은 시스템을 이용하는 계약상대자와 사용자를 대상으로 연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4조(전산자료 백업) ① 전담기관의 장은 시스템 상용소프트웨어·응용프로그램 및 데이터베이스가 파괴되거나 변조될 것에 대비해서 제반절차에 따라 월 1회 이상 전산자료를 백업하여야 한다.

②, ③ (생략)

제15조(장애발생 대책) ① 전담기관의 장은 시스템을 통하지 않은 민원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모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중요한 전산장애가 발생하였거나 불가피하게 시스템 운영 중단이 필

여 시스템 관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리 장소에 출입하여 조사·검사 등을 할 수 있으며, 전담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자 관련 교육) ① 전담기관-----  
-----  
-----  
-----.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전산자료 백업) ① -----  
-----  
-----  
----- 모든 절차-----  
-----  
-----.

②,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장애발생 대책) ① -----  
----- 민원업무-----  
-----  
-----  
-----  
-----

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및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사용자에게도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④ (생략)

### 제3장 전자문서의 관리

제23조(전자도면의 작성 및 납품)

① (생략)

② 계약상대자가 시스템에 전자도면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항만건설도면 납품 유효성 검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자도면의 표준화 준수 여부를 검사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24조(전산자료 관리 및 제공 등) (생략)

제25조(전담기관의 세부지침) (생략)

제26조(예산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

-- 민원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

-----  
-----  
-----  
-----.

②~④ (현행과 같음)

### 제3장 전자문서의 관리

제23조(전자도면의 작성 및 납품)

① (현행과 같음)

② 건설사업을 준공할 때에는 준공성과물 제1항의 -----  
-----  
-----  
-----  
-----  
-----  
-----  
-----  
--경우 시스템에-----.

③ (현행과 같음)

제24조(전산자료 관리 및 제공 등) (현행과 같음)

제25조(전담기관의 세부지침) (현행과 같음)

제26조(예산지원) ① -----  
-----  
-----

에게 시스템 운영·관리·유지보수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② 전담기관의 장은 불가피한 사유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소요 비용을 지불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도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7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7년 2월 16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53호, 2014.2.17>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필요한 -----  
-----  
--.

- ② -----  
-----  
----- 지급 -----  
-----  
-----  
-----.

제27조(재검토기한)제27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8년 5월 20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000호, 2015.5.00>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